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특허법인 세림
대한민국 06729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85 태우빌딩
10층, 11층

발송일 (일/월/년) 2018년 10월 02일 (02.10.2018)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PSD17-0299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06087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8년 05월 29일 (29.05.2018)

우선일 (일/월/년)
2017년 09월 28일 (28.09.2017)

국제특허분류(IPC)
F24F 1/00(2011.01)i, F24F 13/14(2006.01)i, F24F 11/79(2018.01)i

출원인
삼성전자주식회사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8년 09월 21일 (21.09.2018)

심사관
이달경
전화번호 +82-42-481-8440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15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15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15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조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JP 2016-099030 A (SHARP CORP.) 2016.05.30

D2: JP 2508917 B2 (DAIKIN IND., LTD.) 1996.06.16

1. 신규성 및 진보성

1.1 청구항 제1항 내지 제15항

청구항 제1항의 발명과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1에는 공기흡입부(14)가 설치된 케이스(11); 실내의 공기를 케이스(11)로 빨아들여 열교환 하는 실내측 열교환기(16); 케이스(11)의 전면부에 형성된 송출 구멍(12a); 케이스의 바닥면에 설치되는 바닥면통기구(18); 공기흡입부(14)가 설치되어 실내의 공기를 케이스(11)에 빨아들이고 실내에 송출하는 실내 송풍기(17); 유로(B)를 통해서 송출 구멍(12a)으로부터 보내지는 온풍의 풍속을 유로A를 통해서 바닥면통기구(18)로부터 보내지는 온풍 및, 유로C를 통해서 상부통기구(15)로부터 보내지는 온풍 가운데 적어도 어느 것의 풍속과 비교해도 낮도록 하는, 케이스(11)의 전면부(11a)에 설치되며, 송출 구멍(12a)이 복수개로 형성되어 있는 전면 패널(12); 및 실내측 열교환기(16)와 열교환된 유체를 바닥면통기구(18)로 송출할 수 있도록, 유로A와 연결하는 바닥면통기구(18) 및 유로B와 연결하는 전면 패널(12)의 송출 구멍(12a)으로부터, 유체가 내보내지는 상태b와, 유로변경부(31)로 바닥면통기구(18)로 연결하는 유로A의 유체 흐름을 차단하고, 유로개폐부(32)를 닫힘 상태로 하여 상부통기구(15)로 연결하는 유로C의 유체 송출을 정지하는 상태c로 구동 가능하게 마련되는 유로변경부(31) 및 유로개폐부(32)를 포함하는 공기조화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단락 [0001], [0036], [0045]-[0046], [0048], [0064], [0066]-[0067], [0077]; 및 도면 1-2, 7, 10 참조). 다만,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흡입구로부터 유입된 공기가 열 교환기를 통과하기 전에 공기의 일부를 제2 배출구로 안내하는 제1 모드를 더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용문헌 D1과

추가 기재란에 계속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청구범위, 발명의설명 및 도면의 명료성에 관하여 또는 청구범위가 발명의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청구항 제10항의 용어 “제2 유로”는 ‘제3 유로’의 오기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청구항 제10항은 PCT 제6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차이는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유로A와 연결하는 바닥면통기구(18)로 유체가 내보내지는 상태b(단락 [0066]; 및 도면 2, 10 참조) 및 상기 인용문헌 D1과 동일한 기술분야인 인용문헌 D2에 기재된 부공기흡입구(2B)의 하류측으로부터 제2의 공기 분출구(8B)에 걸쳐서 열교환기(6)를 개입시키는 일 없이 형성된 부공기유로(3B)를 형성하는 것(청구항 1; 및 도면 3(c)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2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인 송풍 유닛은 열 교환기의 후방에 배치되는 것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실내측 열교환기(16)는 실내 송풍기(17)를 덮는 지붕과 같이 조합시킨 것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설계변경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단락 [0035]; 및 도면 2 참조).

청구항 제3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인 유로 제어 유닛은 제1 모드로 구동될 때, 열 교환되지 않은 공기를 제2 배출구로 안내하는 바이패스 유로를 포함하는 것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유로A와 연결하는 바닥면통기구(18) 및 유로B와 연결하는 전면 패널(12)의 송출 구멍(12a)으로 유체가 보내지는 경우인 상태b(단락 [0066]; 및 도면 2, 10 참조) 및 인용문헌 D2에 기재된 부공기흡입구(2B)의 하류측으로부터 제2의 공기 분출구(8B)에 걸쳐서 열교환기(6)를 개입시키는 일 없이 형성된 부공기유로(3B)를 형성하는 것(청구항 1; 및 도면 3(c)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4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유로변경부(31) 및 유로개폐부(32)가 상태b일 때 유로A와 연결하는 바닥면통기구(18)로 유체를 보내도록 하는 상태b의 유로변경부(31); 및 실내측 열교환기(16)와 열교환된 유체를 바닥면통기구(18)로 송출할 수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단락 [0048], [0066]; 및 도면 2, 7, 10 참조).

청구항 제5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인 제2 배출구는 제1 배출구의 좌측에 배치되는 제2 좌 배출구 및 우측에 배치되는 제2우 배출구를 포함하며, 유로 제어 유닛은 제2 좌 배출구로부터 배출되는 공기를 안내하는 좌 유로 제어 유닛 및 제2 우 배출구로부터 배출되는 공기를 안내하는 우 유로 제어 유닛을 포함하고, 좌 유로 제어 유닛 및 우 유로 제어 유닛은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송출 구멍(12a)의 하단부에 배치되는 바닥면통기구(18) 및 송출 구멍(12a)의 상단부에 배치되는 상부통기구(15)를 형성하는 것; 바닥면통기구(18)로 배출되는 유체를 안내하는 유로변경부(31) 및 상부통기구(15)로 배출되는 유체를 안내하는 유로개폐부(32)를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포함하는 것; 및 유로변경부(31)가 각 유로A, B, C에 흐르는 유체의 풍량을 조절할 수 있고, 유로개폐부(32)가 유로C 내부를 개폐하는 것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설계변경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단락 [0062]-[0063]; 및 도면 2, 10 참조).

청구항 제6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유로B와 연결하는 전면 패널(12)로만 유체가 보내지는 경우인 상태c; 및 유로A와 연결하는 바닥면통기구(18) 및 유로B와 연결하는 전면 패널(12)의 송출 구멍(12a)으로 유체가 보내지는 경우인 상태b와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단락 [0066]-[0067]; 및 도면 2, 10 참조).

청구항 제7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인 유로 제어 유닛이 제1 모드로 구동될 때, 하우스의 내부에는 흡입구와 제1 배출구를 연결하는 제1 유로, 및 제1 유로의 열교환기와 흡입구 사이에 분기되어 제2 배출구까지 연장되는 제2 유로가 형성되는 것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유로변경부(31) 및 유로개폐부(32)가 상태b일 때, 송풍구(19)와 전면 패널(12)의 송출 구멍(12a)을 연결하는 유로B 및 송풍구(19)와 바닥면통기구(18)를 연결하는 유로A를 형성하는 것(도면 2, 10 참조) 및 인용문헌 D2에 기재된 열교환기(6)를 개입시키는 일 없이 형성된 부공기유로(3B)를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청구항 1; 및 도면 3(c) 참조).

청구항 제8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유로변경부(31) 및 유로개폐부(32)가 상태b일 때, 유로개폐부(32)가 닫힘 상태가 되어 유로C와 연결하는 상부통기구(15)의 유체 송출을 정지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단락 [0066]; 및 도면 2, 10 참조).

청구항 제9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인 유로 제어 유닛이 제2 모드로 구동될 때, 하우스의 내부에는 흡입구와 제1 배출구를 연결하는 제1 유로, 및 제1 유로의 열교환기와 제1 배출구 사이에 분기되어 제2 배출구까지 연장되는 제3 유로가 형성되는 것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유로변경부(31) 및 유로개폐부(32)가 상태b일 때, 송풍구(19)와 전면 패널(12)의 송출 구멍(12a)을 연결하는 유로B; 및 송풍구(19)와 상부통기구(15)를 연결하는 유로C가 형성된 것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설계변경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도면 2, 10 참조).

청구항 제10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유로변경부(31) 및 유로개폐부(32)가 상태b일 때 유로개폐부(32)가 닫힘 상태가 되어 유로C와 연결하는 상부통기구(15)의 유체 송출을 정지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단락 [0066]; 및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도면 2, 10 참조).

청구항 제11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바닥면통기구(18)는 전면 패널(12)에 복수개로 형성되어있는 송출 구멍(12a)보다 큰 크기를 갖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도면 2 참조).

청구항 제12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인 유로 제어 유닛은 제1 모드로 구동될 때, 제2 배출구로부터 배출되는 공기가 제1 배출구로부터 배출되는 공기와 혼합되도록 제2 배출구로부터 배출되는 공기를 안내하는 가이드 곡면을 포함하는 것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유로변경부(31) 및 유로개폐부(32)가 상태b일 때 유로A와 연결하는 바닥면통기구(18) 및 유로B와 연결하는 전면 패널(12)의 송출 구멍(12a)으로부터 유체가 내보내지는 것(단락 [0066]; 및 도면 2, 10 참조) 및 인용문헌 D2에 기재된 제1, 제2의 각 공기흡출구(8A, 8B)에 배설되며, 스테핑 모터(M 2, M 3)에 의해 회전구동되어 토출되는 풍향을 임의로 변경 제어하는 풍향변경판(9A, 9B)(페이지 4, 라인 24-26; 및 도면 1, 3(c), 4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13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인 유로 제어 유닛은 제1 모드 또는 제2 모드에서 소정 각도 회전하며 제2 배출구로부터 배출되는 공기의 방향을 조절 가능하게 구성되는 것은 인용문헌 D2에 기재된 풍향변경판(9A, 9B)은 제1, 제2의 각 공기흡출구(8A, 8B)에 배설되며, 스테핑 모터(M2, M3)에 의해 회전구동되어 토출되는 풍향을 임의로 변경 제어하는 것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페이지 4, 라인 24-26; 및 도면 1, 3(c), 4 참조).

청구항 제14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바닥면과 사이에 공간을 형성하는 케이스(11)의 밀면부(11d)와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단락 [0048]; 및 도면 2 참조).

청구항 제15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공기조화기 실내기는 벽패식 공기조화기여도 좋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단락 [0033]; 및 도면 1 참조).

따라서 인용문헌 D1 및 인용문헌 D2에 기재된 상기 기술적 특징을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청구항 제1항 내지 제15항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청구항 제1항 내지 제15항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4)에 따라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습니다.